



트럼프 2.0 통상 정책 대응방안

: 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 부과 및 USMCA 재검토를 중심으로

“통상 규제, 공급망과 비용 구조에 직접적 영향”



한국 딜로이트 그룹

배 두 용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 리더



02-6099-4847



doobae@deloitte.com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이 다시 한번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캐나다·멕시코·중국을 대상으로 한 고율 관세 부과 조치가 발표되었고, EU 및 기타 동맹국을 겨냥한 추가 조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USMCA 재협상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전자/IT, 자동차, 배터리 및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과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타 국가간 정보교환 및 분석체계 수립 ▲관세 면제논리 개발 ▲공급망 다변화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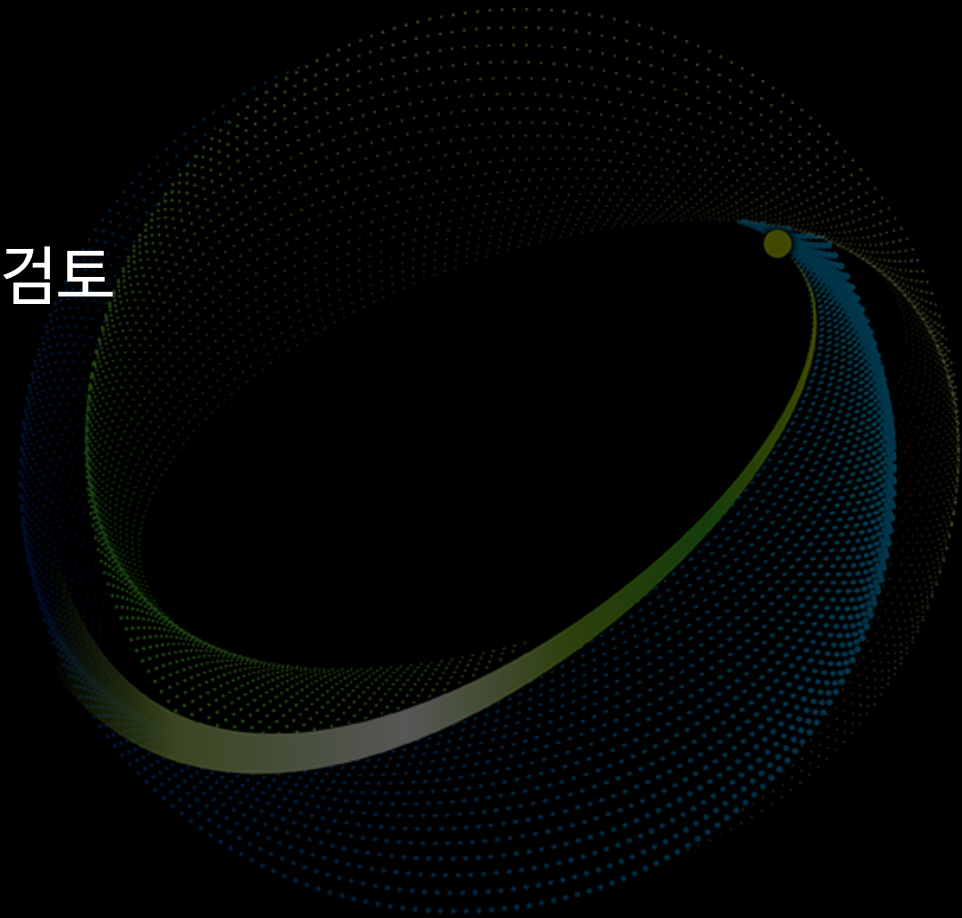
딜로이트는 이번 변화가 귀사의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법규 변화 모니터링, 무역 협정 활용 방안 검토, 원산지 조정 및 공급망 재편 전략 등을 함께 고민하여,

귀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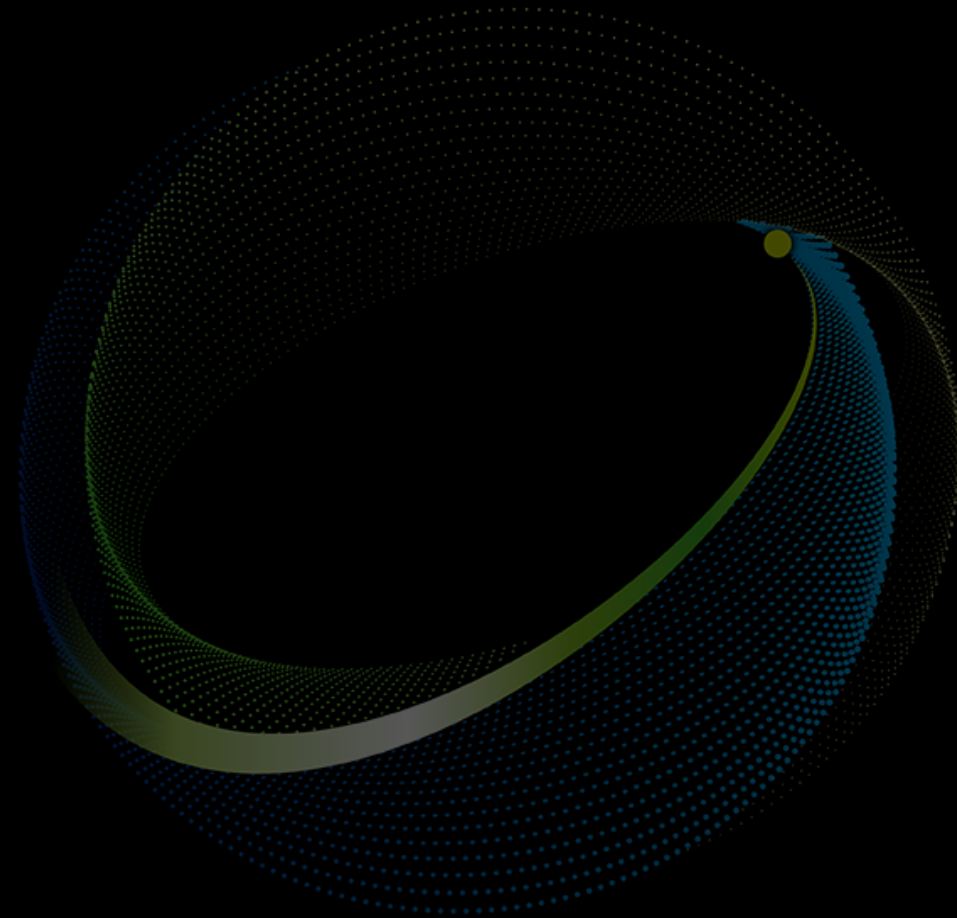
목차

1.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 분석
2. 관세 부과 및 USMCA 재협상의 파급효과 검토
3. 기업의 대응방안



1.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 분석

-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 정책 개요
 - 트럼프 2기 경제정책 및 통상정책 키맨
 - 트럼프 2기 통상 전쟁 Timeline
 - 트럼프 관세 정책의 특징
 - 멕시코, 캐나다, 중국 관세 부과 및 USMCA 재협상 추진 배경과 의도
- [참고]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 근거법 비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 개요



- ✓ 트럼프 2기는 '미국 우선주의', '마가'(MAGA)를 강력하게 추진할 충성파 인물을 무역정책 전면에 배치
- ✓ 주요 정책은 관세 전쟁, 불법 이민자 추방, 중국과 디커플링, 미국 제조업 부흥,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임

트럼프 2기 무역정책

강력한 관세 중심의 보호무역	• '관세 차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실무 협상자'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강경 보호무역 책사' 피터 나바로 선임 고문 3人を 중심으로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 추진
미국 제조업 부흥	•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외국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삼을 전망
글로벌 공급망 재편	• 자국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 •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과 핵심 동맹국, 전략적 경제 파트너 중심의 공급망 재구축 추진

트럼프 2기 경제정책 및 통상정책 키맨

MAGA 공약 이끄는 경제 투톱: 최대 쟁점인 관세정책을 주도하여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할 키맨은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63)과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62)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월가 투자은행 '캐터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



- 트럼프 거액 선거자금 후원 및 정권 인수위 공동위원장
- 대중국 압박 등 관세 정책 주도 예상
- 미국 국내 산업 보호를 담당하는 상무부를 맡으면서 동시에 무역대표부(USTR)까지 총괄, 이른바 '관세 차르' 역할 예상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소로스 펀드 최고투자책임자 출신,
헤지펀드 '키스퀘어' 창업자로
글로벌 금융 전략 전문가



- 선거 캠프에서 감세와 대중국 관세정책 초안 설계하는 경제 고문 담당
- 트럼프 2기 경제정책 설계자, 친기업 성향으로 감세, 규제 완화, 재정적자 축소 등 주도 예상
- 3-3-3 정책(재정적자 축소, GDP 성장률 3% 달성, 원유 증산) 제시. 점진적 관세 부과 발언으로 '절충점' 혹은 '레드라인'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트럼프 2기 경제정책 및 통상정책 키맨

무역통상 전쟁 지휘소: 무역통상 정책을 주도할 키맨은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44) 대표와 피터 나바로(75) 무역·제조업 선임고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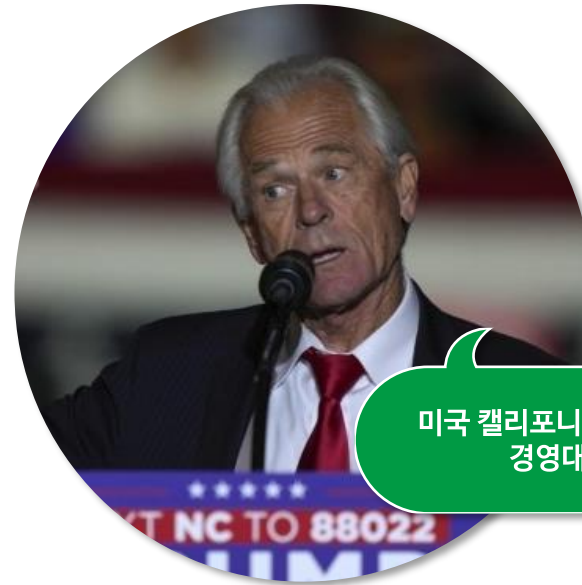
다국적 로펌 '킹앤드스폴링'
대표 변호사



- 트럼프 1기의 '관세 폭탄 설계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의 비서
- 대중국 무역전쟁과 한미FTA 개정 주도
- NAFTA의 USMCA로 대체 관여
- USMCA와 한미FTA 다시 손볼 것이라 강조('24. 5월 조선일보 인터뷰)
- 러트닉 '관세 차르' 하에서 각국 무역협상 실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선임고문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캠퍼스
경영대학원 교수 출신



- 경제학자 출신으로 전통적 민주당원이었으나 트럼프 1기 때 '경제 책사'로 불리며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 및 무역제조업정책국장 역임
-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로 2020년 대선 패배를 부정선거로 규정
- 대중국 무역전쟁 기획하고 중국을 '도둑, 기생충'이라고 부르는 등 강경 반중 보호무역주의자
- NAFTA와 한미FTA 재협상에 참여하며 폐기 검토

트럼프 2기 통상 전쟁 Timeline

24.11.25

트럼프 후보자,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 대응을 이유로 미국의 3대 수입국에 대한 전면적인 새 관세 도입을 발표

25.1.31

중국에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 서명



중국

기존 관세에 +10% 추가 부과



멕시코

모든 수입 제품에 25% 부과



캐나다

모든 수입 제품에 25% 부과

25.2.3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한달간 유예 결정

25.2.4

중국에 추가관세 발효.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2월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25.2.5

유럽연합(EU)에 관세 부과 시사

25.2.9

상호관세(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조치) 예고

✓ [참고] 트럼프의 대선 관세 공약:

미국 노동자 보호, 자동차 산업 보호, 기업 유치 등의 이유로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 ▲중국에 대한 60%의 관세

▲중국 업체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한 100~200% 관세(최대 2천%까지 언급) 등

트럼프 관세 정책의 특징

정치적 이슈 관세화

- “마약과 불법이민자들의 미국 유입을 방지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할 것” - ‘24.11.26 Truth Social

보편관세 부과

- 모든 국가에 대해 10~20%, 중국에 대해 60%의 보편관세 부과
- 해외 생산자 간에는 무차별하나, 해외 생산자와 미국 내 생산자 간 차별 발생

중국과의 디커플링

-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인상하겠다. 100%든 200%든 1,000%든 필요한 만큼의 관세율을 부과할 것” - ‘24.10.10 디트로이트 이코노믹 클럽 연설 中

상호주의 관세 부과

- 미국이 5%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한국이 10%를 부과하고 있다면, 미국 역시 한국산에 10%를 부과하겠다는 것. 기본관세율 5% + 보복관세 5% = 10% 부과

글로벌 최저한세 참여국에 관세 부과

- 미국이 창출하는 혁신기술에 대한 高부가가치가 미국이 아닌 외국의 법인세 과표로 포함된다는 데 대한 반발
- 미국의 BEPS 탈퇴, 한국 등에 보복관세 부과, 글로벌 최저한세 채택 국가 국민들의 미국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등의 보복조치 가능

반덤핑 조사 남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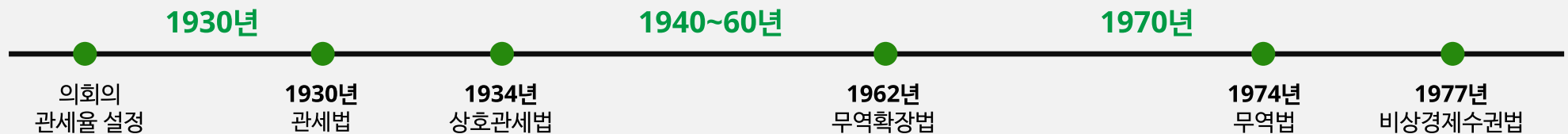
- 미국의 반덤핑 규제에 따른 연쇄효과로 인근 국가 역시 반덤핑 조사를 남발할 위험 존재
- 완제품에 대한 규제 뿐 아니라 원자재에 대한 규제도 급격히 증가할 것

트럼프 관세 정책의 특징 -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활용

중국산 펜타닐의 미국 유입과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붙은 것은, 관세 부과에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한 '무역확장법' 제232조가 아니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즉시 관세 인상 권한을 얻기 위한 것

- ✓ **1974년 무역법 제301조와 1930년 관세법 제338조:** 미국 상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역국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 부여
- ✓ **무역확장법 (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 수입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해당 수입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
- ✓ **1974년 무역법 제122조:**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혹은 심각한 환율 저하 발생 시 대통령에게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제402조는 대통령이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정상무역관계를 유예 및 철회하여 정상무역관계 지위국보다 관세율표상 높은 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 ✓ **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전쟁·비상시 대통령에게 대외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부가 이러한 권한을 통해 관세를 부과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 관련 법안 적용 추이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멕시코, 캐나다, 중국 관세 부과 및 USMCA 재협상 추진 배경과 의도

미국의 수입국 순위 및 수입액 변화

(단위: 미화 100억달러)

순위	국가	수입액			연평균 증가율(%)
		2021	2022	2023	
1	멕시코	38.3	45.2	47.5	7.5
2	중국	50.4	53.6	42.7	-5.4
3	캐나다	35.7	43.7	41.9	5.4
4	독일	13.5	14.7	15.9	5.8
5	일본	13.5	14.8	14.7	3.0
6	한국	9.5	11.5	11.6	6.9
7	베트남	10.2	12.8	11.4	3.9
8	대만	7.7	9.2	8.8	4.5
9	인도	7.3	8.6	8.4	4.5
10	아일랜드	7.4	8.3	8.2	3.7

출처: 미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대한상의 재인용

USMCA 3국 무역 의존도 심화

- ✓ 트럼프 1기 중국과 무역 전쟁 이후 미중 교역은 감소, USMCA 발효 이후 멕시코가 중국을 제치고 미국 수입액 기준 점유율 1위 국가로 올라섰고, 캐나다 역시 연평균 5% 이상 대미 수출 증대 양상을 보임
- ✓ 2023년 기준 미국은 멕시코 수출의 83% 이상, 캐나다 수출의 75%를 각각 차지. 북미 3국간 교역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 이 때문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그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음

- ✓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 품목에서 중국 비중이 2017년 16.9%에서 2023년 9.4%까지 줄어드는 동안 같은 품목에 대한 대멕시코 수입 비중이 2023년 17.9%까지 상승,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 기지화
- ✓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베트남과 멕시코의 대중국 수입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동시에 이들 국가의 대미 수입시장 점유율 급상승

멕시코, 캐나다, 중국 관세 부과 및 USMCA 재협상 추진 배경과 의도

미국의 對中 30조 관세부과품목 수입 추이('17~'23)

(단위: 억 달러, %)

순위	국가	'17(A)		'23(B)		증감(B-A)		'17~'23 CAGR
		수입	비중	수입	비중	수입	비중	
1	멕시코	2,873	15.1	4,430	17.9	1,557	2.8	7.5
2	캐나다	2,526	13.3	3,960	16.0	1,433	2.7	7.8
3	중국	3,209	16.9	2,335	9.4	-874	-7.5	-5.2
4	한국	634	3.3	1,119	4.5	485	1.2	9.9
5	베트남	396	2.1	808	3.3	413	1.2	12.7

주: 순위는 2023년 수입 금액 기준

자료: USITC,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2024년 19호

-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으로 예정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의 조기 재협상 추진 의지 시사
 - ✓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우회수출을 차단하고, 환적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중국의 멕시코 생산 자동차에 100%, 200% 나아가 2,000% 고율 관세 부과 위협)
 - ✓ 이러한 정책은 1기 때 직접 서명하고 2020년 7월 발효한 USMCA의 3국 무관세 협정 내용과 충돌

멕시코, 캐나다, 중국 관세 부과 및 USMCA 재협상 추진 배경과 의도



- ✓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실시되더라도 사태가 장기화되기 보다는 앞으로 다양한 협상과 협정 재검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원하는 양보를 미리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
- ✓ USMCA의 재검토를 활용해 미국의 이익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정 내용 수정될 것은 명약관화. 3국의 협상과 추후 양자 논의에 따라 해당 협정은 '부분변경을 통한 현상유지'가 될 수도 있고, 파국적인 '무역협정의 철수' 가능성도 있음
- ✓ 장기적으로는 북미 국가들이 보다 강화된 경제 블록화, 특히 무역 협정을 넘어선 '관세 동맹'으로 발전을 통한 블록 경제가 지니는 집단적 힘의 강화를 추구할 수 있음

유리한 재협상 기초

미국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협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초석으로 관세 부과 위협을 활용

북미 경제블록 강화

북미 블록 경제적 영토 확장과 대외 지배력 강화 기초로 활용.
캐나다 51번째 주, 파나마운하 반환, 그린란드 매입 발언 등 의지

EU 같은 관세동맹화

최대 관세 동맹인 유럽연합(EU)의 성공 사례를 활용해 북미 공동외부관세(CET) 설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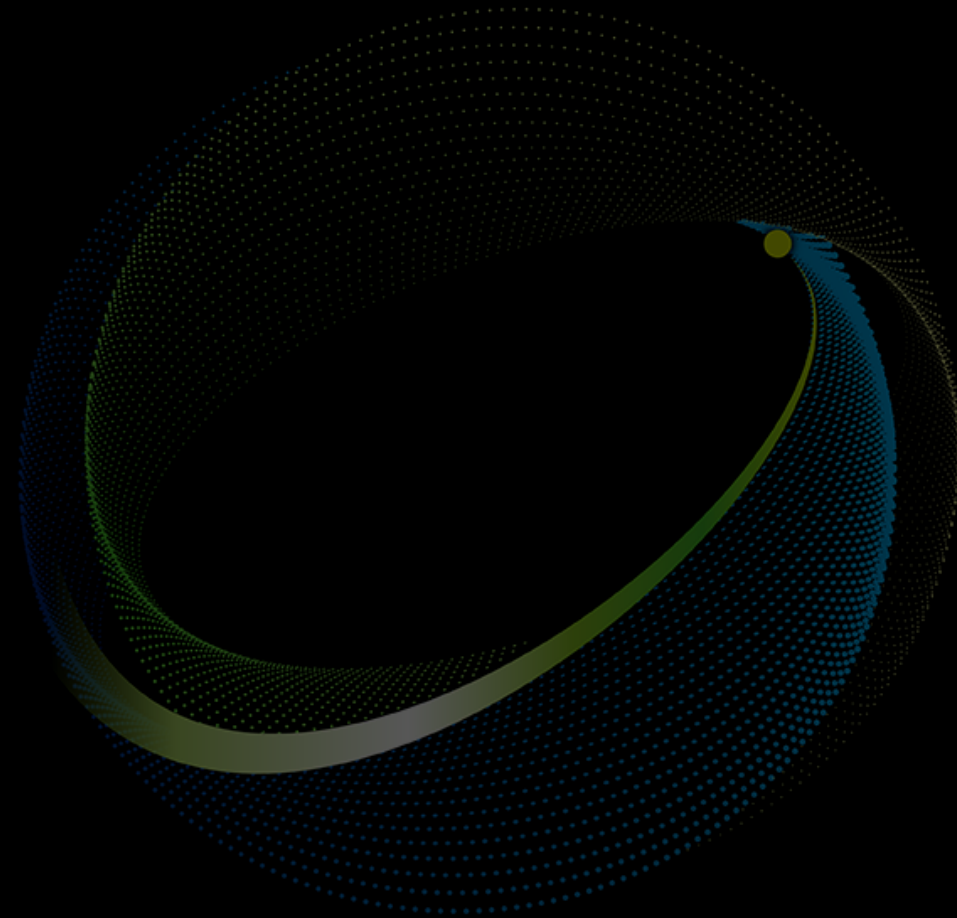
[참고]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 근거법 비교

구분	발동 요건	대통령의 권한	사전조사	기한	상한	주요 관세 조치
「1974년 무역법」 제301조 이하	교역국의 불공정 관행	①무역협정상 양허 혜택 정지·철회·제한, ②관세 및 수입 제한 등	O (USTR)	X	X	'18~19년 대중국 관세 '24년 대중국 관세
「슈퍼 301조」	교역국의 불공정 관행	①무역협정상 양허 혜택 정지·철회·제한, ②관세 및 수입 제한 등	X	X	X	직접적인 관세 조치는 없었으나 대상국과 협상을 통해 합의 도출
「1930년 관세법」 제338조	미국 상거래에 대한 차별 행위	관세 부과 및 수입 금지	X	X	O (50%)	-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특정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	수입 물량 조절 조치	O (상무부)	X	X	'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
「1974년 무역법」 제122조	국제무역수지 적자, 달러 가치 하락 등	①관세, ②수입 쿼터, ③두 조치 병행	X	O (150일)	O (15%)	-
「1974년 무역법」 제402조 이하	비시장경제국의 자국민 이민의 자유 억압 등	비시장경제국의 정상무역관계 지위 유예·철회	X	X	X	'22년 러시아에 정상무역관계 철회 및 제2열의 관세율 적용
「적성국무역법」	전쟁 시	외환거래, 금 또는 은 주화, 통화의 수출 등을 조사, 규제 및 금지 등	X	X	X	1971년 수입품 10% 보편관세
「비상경제수권법」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 시	광범위한 경제거래 규제	X	X	X	-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관세 부과 및 USMCA 재협상의 파급효과 검토

- 관세부과 및 USMCA 재협상에 따른 파급 효과 예상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예상
- 관세 부과에 역효과에 대한 우려 부상
- 한국 기업의 주요 대미 투자 현황
- 관세 부과 및 USMCA 재협상이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



관세 부과 및 USMCA 재협상에 따른 파급 효과 예상

미국 핵심 물류공급망의 현재와 미래



출처: 이성우 외, 한국-북미 무역구조 분석 및 물류공급망 변화 대응 방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발간 예정), 대한상의 재인용

- ✓ 관세 부과 압박 시 일시적으로는 북미 3국간 무역 갈등 심화, 중국 역시 수출통제 및 보복 관세 등에 나서기 시작하는 등 무역전쟁 재개 불가피
- ✓ 미국 의도대로 자국 생산기지 구축을 통해 지역내 생산 및 조달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불가피. 미 동부 연안과 멕시코 국경 지역 중심 집중 투자와 한국 대만 등 경제동맹국과 인도 베트남 등 전략적 경제파트너를 포함하는 무역지대 확대 예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예상

공급망 패러다임 전환

기후변화, 미중 갈등, 코로나19, 전쟁 등 지정학적 사태로
저비용 고효율의 '적시 공급'(Just in time)에서 안정과 신뢰, 가시성을 통한
'만약의 경우 대비'(just in case)로 패러다임 전환

세계화 후퇴와 자국 중심 주의, 지역화 추세

세계의 공장인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 공급망에서 탈피하는 '탈중국화' 진행.
인공지능, 차세대 제조 등 미래 성장산업에서 글로벌 패권 주도권 싸움 진행형

미국 우선주의 부상

미국 산업 및 노동자 보호 우선주의로 기존 무역협정 무력화, 개별 협상 통한
재협상 내지 폐기 예상

지역경제 블록화

세계는 미국 중심 블록과 중국 중심 블록 그리고 나머지 블록 등으로 3분할되고 있음.
미국 중심 블록은 USMCA를 주축으로 EU와 영국, 호주 그리고 한국, 일본, 인도 등
경제동맹국, 전략파트너 포함

관세 부과와 역효과에 대한 우려 부상

브루킹스 연구소



브루킹스, “북미 무역 및 투자의 역할 훼손. 미국의 무역협정과 경제적 협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고, 또한 중국에 대한 전략적 대응 노력을 훼손할 것 우려”

2023년 기준 멕시코 캐나다 수입액 9,000억 달러, 총 1,7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무역에 기반. 이 중 미국 일자리 450만 개

북미 무역 50%가 자동차 의료장비 에너지 농산물이 차지, 중북 관세 적용시 사실상 경제적 실현 불가능

Tax Foundation



조세재단,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가장 큰 비용 부담. 부분적 전가 혹은 완전한 전가 및 과도한 전가 사례도 발견. 외국 수출업체가 가격을 낮춤으로써 관세의 경제적 부담을 흡수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음”

“장기적 효과로 GDP 0.2% 감소하고 총 고용이 14만 2,000개 감소할 것”

미 의회예산국(CBO) “관세 인상 부정적 GDP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더 컸으며 실질 수출량을 0.3% 감소시키고 있다고 추산”

한국 기업의 주요 대미 투자 현황

2022~2024 한국 기업의 주요 대미 투자(예정) 현황

(단위: USD 백만)



미국 생산 거점

- ✓ 삼성전자(사우스캐롤라이나)
- ✓ 현대기아차(앨라배마와 조지아)
- ✓ 현대모비스(조지아)
- ✓ LG전자(테네시)
- ✓ LG엔솔(미시간, 애리조나) 등



캐나다 생산 거점

- ✓ LG엔솔&스텔란티스 합작 넥스트스타 에너지(온타리오)
- ✓ 포스코퓨처엠의 GM 합작 공장(퀘벡)
- ✓ 한온시스템(온타리오) 등



멕시코 생산 거점

- ✓ 삼성전자(티후아나)
- ✓ LG전자(몬테레이)
- ✓ 기아(누에보레온)
- ✓ HL만도(코아우일라)
- ✓ 포스코(알타미라) 등

연번	기업명	위치	투자금액	투자내용
1	삼성전자	텍사스(오스틴)	24,500	반도체 공장(2개소) 신설 (~2042년)
2		텍사스(테일러)	45,000	반도체 공장(9개소), 첨단 연구개발(R&D)센터 신설 (~2042년)
3	삼성SDI	인디애나(코코모)	2,500	스텔란티스 합작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
		인디애나(뉴칼라일)	3,000	GM 합작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
4	SK하이닉스	인디애나(웨스트라피엣)	3,870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 시설 건립
5	현대·SK온	조지아(바투우)	5,000	배터리셀 합작 공장 설립
6	현대자동차	앨라배마(몽고메리)	300	전기차 생산라인 증설
7		조지아(서베너)	5,540	전기차 전용 공장 및 배터리 셀 공장 설립
8	현대모비스	조지아(브라이언)	926	전기차 부품 공장 설립
9	현대·LG에너지솔루션	조지아(램브로크)	7,600	배터리 셀 합작 공장 설립
10	기아	조지아(웨스트포인트)	200	EV9 생산라인 구축
11	LG에너지솔루션	오하이오(파이엣)	4,400	HONDA 합작 파워치 배터리 셀, 모듈 생산공장 설립
12		미시간(플랜드)	1,700	파워치형 배터리 생산공장 증설
13		애리조나(퀸크릭)	5,600	원통형 배터리, 리튬인산철(LFP)배터리 생산공장 설립
14	LG화학	테네시(클락스빌)	3,200	양극재 생산공장 설립
15	한화큐셀	조지아(헛필드)	171	태양광 모듈 생산공장 설립
16		조지아(카터스빌)	2,500	태양광 모듈 생산공장 설립
17	한화첨단소재	조지아(카터스빌)	147	태양광 모듈 생산공장 설립
18	한국타이어	테네시(클락스빌)	1,575	생산공장 2, 3단계 증설(~2026년)
19	롯데케미칼	켄터키(엘리자베스타운)	239	양극박 생산공장 설립
20	아진산업	조지아(홀)	317	전기차 부품 생산공장 설립
21	세원아메리카	조지아(에핑햄)	300	전기차 부품 생산공장 설립
22	에코플라스틱	조지아(볼로크)	205	전기차 부품 생산공장 설립

관세 부과 및 USMCA 재협상이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



- ✓ 한국 경제는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80% 이상이고 캐나다의 경우도 25% 비중을 차지하는 등 미국 통상정책이 변화할 경우 수출이 감소하는 충격에 직면
- ✓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와 중국에 자동차와 가전, IT제품 생산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고, 이들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완제품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

미국 관세 부과 산업별 영향



전자·IT

- 보호무역 정책 강화로 수출 규제가 늘어나거나 현지 생산 요구가 증가할 것
- 관세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수요 감소 및 한국 기업 수익성 악화



전기차·배터리

-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시, 해당 지역에 생산시설을 둔 한국 배터리 기업들 가격 경쟁력 약화
-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철회시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에 직격탄 (2024년 상반기 한국 배터리 3사 AMPC 규모는 약 8,400억 원 규모 추정)



반도체

- 메모리, 파운드리, 레거시, 장비 등 공급망 전반에 변화 예상
- 수출 통제 강화로 저사양 AI 칩 등 레거시 칩과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이 확대될 가능성



자동차

- 자동차에 고율 관세나 수출 쿼터제를 적용 시 한국 자동차 수출 차질 가능성
-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 멕시코 공장을 통한 대미 수출 차질

[참고] 관세 부과 및 USMCA 재협상이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 - 산업연구원(KIET)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 평가

- ✓ 보편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최대 13.1% 줄어들 수 있으며, 국내 부가가치는 최대 10.6조 원 감소**. 대미 수출을 둘러싼 주요 수출국 간 경쟁보다는 미국 내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투자 유출 등 악영향 예상
- ✓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 감소 효과는 시나리오에 따라 각각 -5.9~-13.6%, 반도체는 -4.7~-8.3% 수준으로 예상하고, 특히 자동차의 경우 경쟁국 관세 수준이 낮을수록,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대 세계 관세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에 불리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시나리오별 한국의 대미수출 영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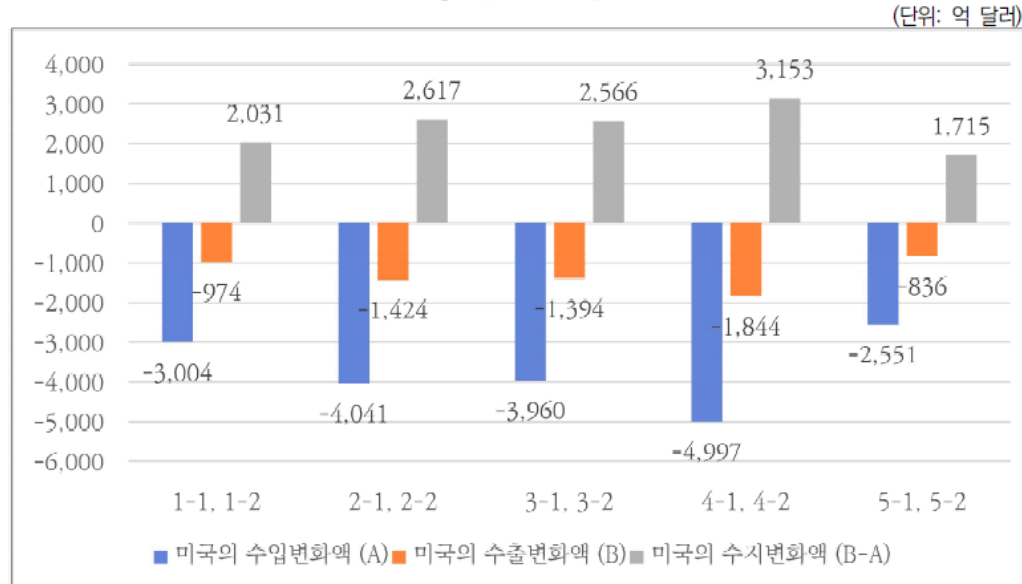
산업구분	시나리오① 주요국(한국 포함) 10% & 중국 60%			시나리오② 맥, 캐, 한 10% & 중국 60% & 기타 20%		
	시장규모효과 (B)	수출 간 대체효과 (C)	총효과 (D=B+C)	시장규모효과 (B)	수출 간 대체효과 (C)	총효과 (D=B+C)
음식료	-7.6	-2.0	-9.6	-9.5	-2.4	-11.9
섬유·의복	-17.8	-1.0	-18.8	-21.3	-0.4	-21.6
화학	-7.7	1.3	-6.3	-10.5	0.4	-10.2
섬유·정제	-4.3	0.0	-4.3	-6.2	-0.2	-6.4
비금속광물	-13.6	-1.6	-15.2	-16.4	-2.3	-18.8
비철금속	-14.7	-0.4	-15.1	-18.1	-0.7	-18.8
기계류	-13.2	2.3	-10.9	-16.7	1.9	-14.8
자동차	-7.8	0.1	-7.7	-10.3	4.4	-5.9
기타수송	-10.1	-7.7	-17.8	-12.3	-3.0	-15.2
반도체	-7.5	2.7	-4.7	-9.7	2.7	-7.0
전자	-24.2	1.7	-22.5	-25.5	1.9	-23.6
전기전자	-14.2	0.6	-13.6	-17.3	0.4	-16.8
기타제조업	-16.3	3.3	-12.9	-18.6	3.4	-15.2
제조업 계	-16.3	1.0	-9.3	-13.1	2.4	-10.7

출처: 산업연구원

산업구분	시나리오③ 맥, 캐 10% & 중국 60% & 기타(한국포함) 20%			시나리오④ 맥, 캐 25% & 기타 주요국(한, 중 포함)10%		
	시장규모효과 (B)	수출 간 대체효과 (C)	총효과 (D=B+C)	시장규모효과 (B)	수출 간 대체효과 (C)	총효과 (D=B+C)
음식료	-10.2	-2.6	-12.8	-7.3	2.0	-5.2
섬유·의복	-22.9	-0.4	-23.2	-8.3	-0.6	-8.8
화학	-11.2	0.8	-10.4	-6.7	0.3	-6.3
섬유·정제	-6.5	-0.2	-6.7	-7.3	0.4	-6.8
비금속광물	-17.5	-2.2	-19.7	-10.7	1.8	-9.0
비철금속	-19.1	0.8	-19.8	-9.7	1.0	-8.7
기계류	-19.0	2.2	-16.8	-10.6	-1.3	-11.8
자동차	-11.4	1.2	-10.2	-11.7	-1.9	-13.6
기타수송	-14.7	-3.0	-17.7	-9.1	-5.2	-14.2
반도체	-10.9	2.6	-8.3	-4.7	-1.3	-5.9
전자	-26.4	1.2	-25.2	-6.1	0.0	-6.1
전기전자	-18.3	0.2	-18.1	-9.0	0.2	-8.8
기타제조업	-19.6	3.4	-16.1	-7.2	-1.7	-8.9
제조업 계	-14.3	1.3	-13.1	-9.2	-1.0	-10.2

[참고] 관세 부과 및 USMCA 재협상이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트럼프 관세정책의 미국 수출입 효과



주: 1) 파란색은 미국의 일방적 관세부과로 인한 미국의 수입변화액을, 주황색은 상대국의 보복관세로 인한 미국의 수출변화액을, 회색은 미국과 상대국의 관세부과로 인한 미국의 수지변화액을 의미함.
 2) 분석자료는 2022~23년 평균액을 사용함.
 3) HS코드 세부세번별로 분석하여 합산한 결과이며, 분석대상은 증가세 대상 품목으로 한정함.

트럼프 관세정책의 대한국 거시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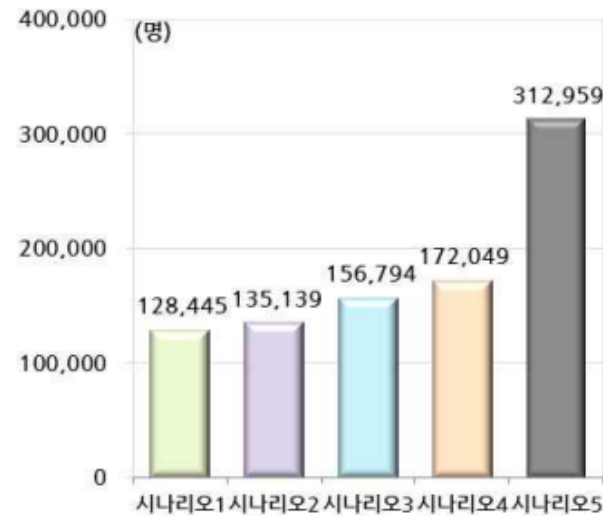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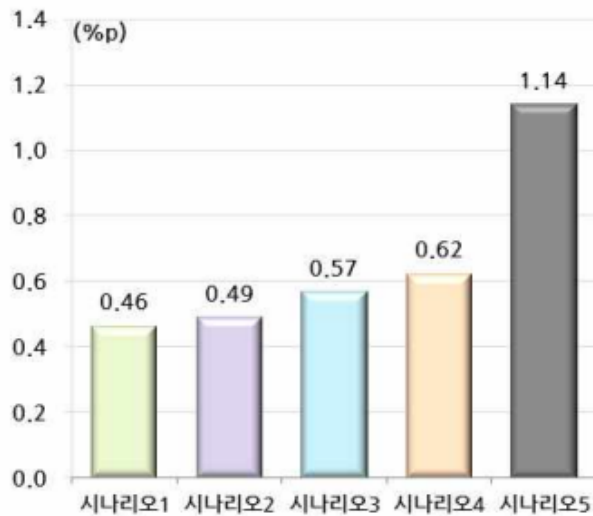
		시나리오 1-1	시나리오 2-1	시나리오 3-1		시나리오 4-1		시나리오 5-1
					부분균형		부분균형	
미국의 관세부과	경제성장률(%)	0.07	0.12	0.03	-0.23	0.05	-0.26	0.07
	후생(억 달러)	36	61	-12	-248	-19	-288	20
미국의 관세 + 상대국의 보복관세		시나리오 1-2	시나리오 2-2	시나리오 3-2		시나리오 4-2		시나리오 5-2
					부분균형		부분균형	
	경제성장률(%)	0.07	0.13	0.03	-0.23	-	-0.27	0.08
	후생(억 달러)	35	61	-128	-255	-	-299	20

주: 1) 시나리오 4-2의 경우 미국과 중국 간 고관세 부과로 인해 안정적인 균형값을 도출하지 못함.
 2)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균형은 한국의 대미 수출감소 및 제3국으로의 중간재 수출감소만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냄.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시나리오 별로 한국의 연간 총수출은 최소 53억 달러에서 최대 448억 달러(GDP의 약 0.7%)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
- ✓ 미국이 한국에도 보편관세 10~20%를 부과할 경우 직접효과로 대미 수출액이 약 152억~304억 달러 감소하고, 제3국 관세 부과로 인해 중간재 수출이 47억~116억 달러 줄어들며, 상대국의 대미 보복 관세로 인한 미국 수출 감소에 따라 한국 중간재 수입이 약 6억~28억 달러 감소
- ✓ 다만 한국산에 대한 대체수요 증가와 제3국으로의 수출전환 성공 여부에 따라 실질GDP가 소폭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

[참고] 관세 부과 및 USMCA 재협상이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 - 현대경제연구원

2차 관세 전쟁의 한국 경제 및 수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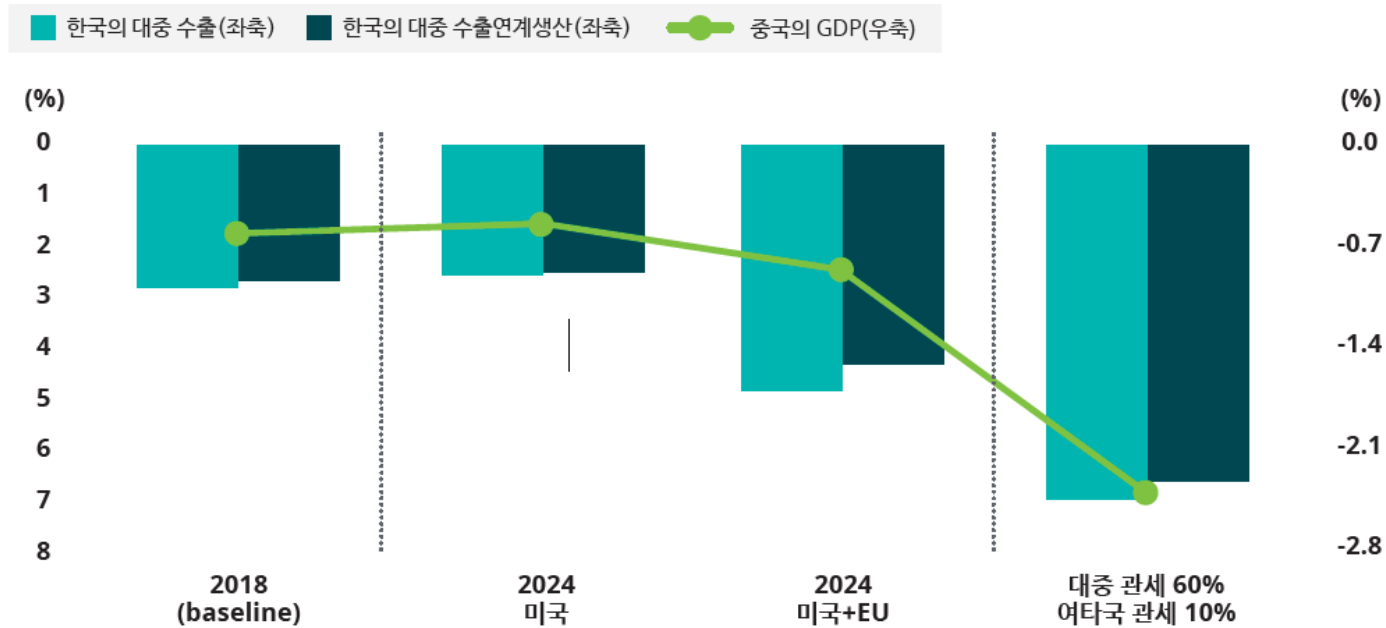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평균관세율 인상폭
시나리오 1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	0.7%p
시나리오 2	-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 -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보복관세)	1.0%p
시나리오 3	-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 -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보복관세) - 미국의 세계 나머지 국가 제품 수입 관세율 10% 적용	1.8%p
시나리오 4	-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 -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보복관세) - 미국의 세계 나머지 국가 제품 수입 관세율 10% 적용 - 세계 나머지 국가의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10%(보복관세)	2.3%p
시나리오 5	-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 -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보복관세) - 미국의 세계 나머지 국가 제품 수입 관세율 10% 적용 - 세계 나머지 국가의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10%(보복관세) - 이외 모든 교역 거래 수입 관세율 10% 적용	7.5%p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 ✓ 현대경제연구원(HRI)은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 10%, 중국산에 60% 관세가 부과될 때 우리나라 수출액은 최대 347억 4,000만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
- ✓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도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 감소 영향은 1.1%p에 달하고, 취업자수 감소 폭은 31만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참고] 관세 부과 및 USMCA 재협상이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 - 한국은행

미국 대중 관세의 우리나라 대중 수출 영향



출처: 한국은행 조사국

- ✓ 한국은행은 대중국 수출연계생산이 수출 통계 비중인 25%보다 더 높으며, 미국이 대중 관세를 60%,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10%까지 올릴 경우 우리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이 6% 이상 감소하고 GDP도 1.0%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분석을 제시

[참고] 관세 부과 및 USMCA 재협상이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 - 주요 증권사

주요 완성차 업체 2023년도 멕시코 생산/판매/역외수출 현황

(단위: 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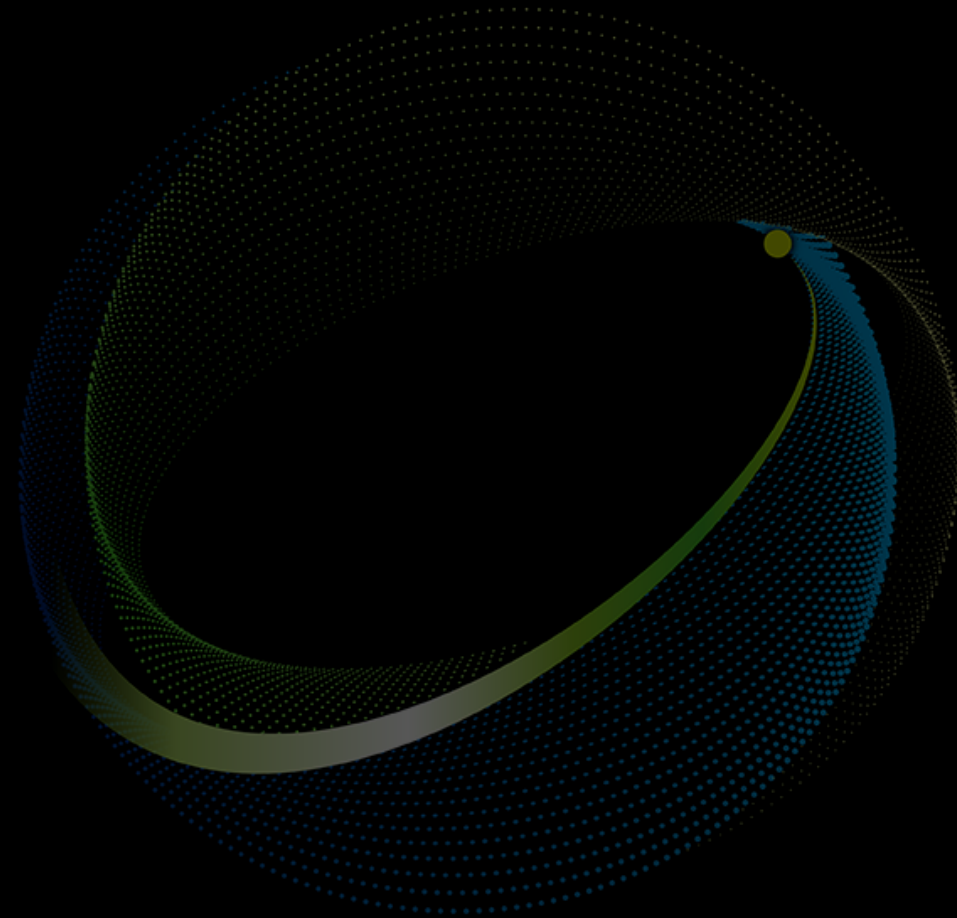
	판매	생산	멕시코 역외 수출(생산-판매)	비중(%)
현대차그룹(기아)	143,247	256,000	112,753	44.0
Toyota Group	109,815	251,540	141,725	56.3
Honda	38,911	167,249	128,338	76.7
GM Group	184,051	722,631	538,580	74.5
Ford Group	49,242	365,365	316,123	86.5
Stellantis	96,795	467,542	370,747	79.3
미국 Big3 합계	330,088	1,555,538	1,225,450	78.8

출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 한국 자동차 산업은 강화된 원산지 규정과 관세로 인해 생산 비용 증가와 경쟁력 약화 예상.
- ✓ “관세 폭탄 현실화 땀 현대차 기아차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 대비 20% 감소”(메리츠증권)
- ✓ “현대차 현지 생산 43% 비중을 감안하면 영업이익 감소분은 13%, 기아차는 멕시코 공장으로 감소 폭이 더 클 것”(다올투자증권)
- ✓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현대차·기아차는 2% 미만 수익성 악화 정도 수준에서 관리 가능. 유럽과 미국 완성차 업체는 연간 이익의 최대 17%를 감소 예상. 특히 볼보, 재규어 랜드로버, 제너럴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대량 자동차 생산하는 업체가 가장 큰 위험에 노출

3. 기업의 대응 전략

-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
- 트럼프 관세 정책 대응 방안
- 자유무역에서 관리무역 시대로 전환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

한국 기업과 정부는 ▲현지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기존 FTA 프레임 활용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 ▲장기적인 무역 다변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한 대응에 나서야 함

현지 생산 확대

- 현지에서 생산 시설을 확충하여 관세 부담을 줄이고 현지화 전략 강화
- 멕시코 및 캐나다 정부와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

공급망 다변화

-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및 중간재가 북미 현지에서 소비되거나 일부 수출되고 있으므로 공급망 재편에 따라 관련 인프라 확보 및 북미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

기존 FTA 프레임 활용

- 기존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 프레임을 활용하여 무역 장벽 최소화
- 멕시코와는 FTA 체결 추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경제협력체 가입을 가속화하여 '블록' 단위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마련 고려

정책 모니터링

- 미국 차기 행정부의 조세 및 관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기업의 적절한 대응 전략을 모색. 이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 디커플링, 세관 최적화 등 위험완화 전략 구사

무역 다변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 근본적인 대응책은 수출 다변화와 더불어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
- 대중국 수출 기반은 기술 중간재 중심에서 소비제품으로 다변화하고 내수시장 진출 확대

트럼프 관세 정책 대응방안

트럼프 관세 정책 특징	기업의 대응방안
정치적 이슈 관세화	- 미국과 타 국가 간 정치적 이슈는 우리 기업의 경제적 이슈 - 해외 진출 국가와 미국 간 양자 이슈에 대한 정보교환 및 분석체계 수립 필요
보편관세 부과	- 해외 생산자 간에는 무차별하나, 해외 생산자와 미국 내 생산자 간 차별 발생 - 미국 내 생산자가 우대 받는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 논리 개발 필요 (대체불가능성)
중국과의 디커플링	- 기존 FTA원산지 기준에 따른 평균적 접근법 부인 → 반덤핑 조사의 '추적' 방식 사용 (입증책임의 전가 문제에 대한 대비 필요) - 일반원산지 기준에 따른 원산지 재검토 필요
상호주의 관세 부과	한국 등 부품 수출국의 관세율 체계 변경 필요
글로벌 최저한세 참여국에 관세 부과	미국만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서 탈퇴할 경우의 조세전략 수립 필요
반덤핑 조사 남발	한국은 중국의 우회수출기지로 평가. BOM(Bill of Materials)상 모든 하위 자재에 대한 국경이동 현황 검토 필요

트럼프 관세 정책 대응방안 - 보편관세 부과에 대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대응 기조와 리스크

보편관세 부과에 대응한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

- 보편관세 부과에 대해 기업들은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됨

(Case 1) 미국 내 MSRP의 인상 (예: 10% 이하) → 관세 인상분 미국 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효과 (우발적인 관세 Risk 미미)

(Case 2) 미국 向 완제품 및 CKD의 FOB 가격 인하

- 보편관세 도입에 따른 관세 인상분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FOB 가격 인하**

 **Case 2** : 관세 분야 주요 분석 대상

파생되는 리스크

- (美 관세 과세가격) 보편관세 부과 효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법인에 제공하는 할인금액의 적정성 검토
 - ✓ 본사와 미국법인 간 완제품 및 CKD 거래 시 미국법인의 수입가격(=관세 과세가격)의 급격한 인하 예상
 - ✓ 보편관세 부과 효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① 수입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할인인지 여부 및 ② 인하된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등 관세 관점에서 수입가격(이전가격) 적정성 검토
 - ✓ 이 경우, 미국 내 관세포탈죄(False Statements) 등으로 처벌 가능성도 함께 검토
- (FTA 적용) 보편관세 부과 효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법인에 할인된 FOB 금액으로 판매할 경우 FTA 원산지 지위 적정성 검토
 - ✓ 미국으로 수출되는 완제품 및 CKD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주로 부가가치기준) 충족 후 FTA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 부가가치기준은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한국 내 발생한 부가가치비율을 산정하게 되므로, FOB 가격이 낮아질 수록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유리해짐
 - ✓ 다만, 할인된 FOB 금액이 정상 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경우 FTA 원산지 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전 점검 등 필요

트럼프 관세 정책 대응방안 - 미중 디커플링에 따른 복합 리스크 대비

레거시 반도체 301조 조사 + 보편관세 부과의 복합적 영향 사전 파악 및 대비 필요

한국산 제품에 단순히 20%만 부과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

'24.12.23,
USTR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301조 조사 착수

- ✓ 미국 상무부는 대부분의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다른 제품에 포함돼 수입된다는 이유로 '중국산 반도체가 포함된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조사를 통해 상품 전체가 아닌 반도체 부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부품 관세'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고도 전했다.
- '24.12.17 IT조선(<https://it.chosun.com>)

Option #1a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한해 60% 보편관세 부과 (기타 부분은 20%)

Option #1b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한해 60%를 초과하는 301조 추가 관세 부과

Option #2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를 사용한
모든 제품에 대해 중국산 보편관세 60% 부과

- ✓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정보를 추적하여 보고하지 못하면 완제품에 대해 $\geq 60\%$ 관세 부과
- ✓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N차 벤더 정보가 추적되어 BOM*에 표시되어 있어야 함

*BOM: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조립품, 가공품 등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

트럼프 관세 정책 대응방안 - 미중 디커플링에 따른 복합 리스크 대비

중국산 보복관세의 한국 적용 리스크 대응방안

Section 301 중국산 보복관세 부과에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

-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물품에 대해 고세율의 보복관세(Section 301 Tariffs) 부과
- 보복관세율은 물품 HS Code별로 부과율이 상이하며, 기본세율에 '추가하여' 부과됨 (예: 기본세율 8% + 보복관세율 25% = 총 33% 부과)
- **Section 301 (중국산 보복관세) 부과를 위한 원산지(중국산) 판단 기준은 FTA 원산지 판단 기준 등과 상이함 (독립적인 판단 要)**

관련 규정

19 CFR § 134.1

(b) Country of orig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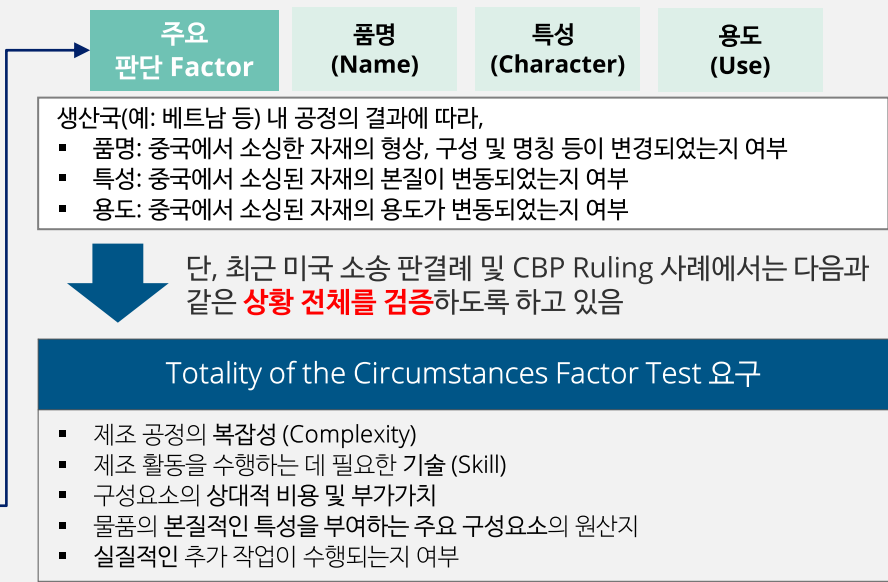
Country of origin means the country of manufacture, production, or growth of any article of foreign origin entering the United States. Further work or material added to an article in another country must effect a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 order to render such other country the "country of origin"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t.

(b) 원산지

원산지(Country of origin)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성장 국가를 의미합니다. 특정 국가가 원산지 지위를 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수행된 추가 작업 또는 투입된 재료가 제품의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영향을 주어야만 한다.

본질적 특성을 부여할만한 실질적 제조공정이 이루어지거나, 실질적으로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 기준



중국산 보복관세의 한국 적용 리스크 대응방안

- (중국산 보복관세 회피를 위한 구매전략 수립) 수출품목의 기능, 특성, 공정 분석을 통하여 보복관세 부과 Risk 등 사전점검 및 보복관세 회피를 위한 구매전략 운영안 수립 필요
- (중국산 보복관세 대상 유권해석) 최종 수출물품의 보복관세 부과대상 여부 판단은 미국 CBP Ruling을 받아야하는 사안이므로, 관련 유권해석을 사전에 신청하여 구비할 필요

자유무역free trade에서 관리무역managed trade 시대로 전환

- 1.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특징은 “예측불가능성”
- 2. 관리무역의 시대, 각국 정부의 통상·산업·안보·외교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큰 폭으로 변동
- 3. 수시로 급변하는 정책에 맞추어 생산물량을 유연하게 실시간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생산지 최적화(생산량 최적 배분) 프로세스 도입 필요

- ① BOM에 원산지, HS Code, Vendor, 특허, 첨단반도체 또는 레거시반도체 여부, 탄소배출량 등의 정보 추가
- ② Vendor 정보에 ESG 경영현황, ESG Rating, 평판, 아동노동착취 여부, 생산공장의 위치, 분쟁광물·핵심광물 사용 여부, 탄소배출량 제공여부 등의 정보 추가
- ③ 제품별, 원재료 조달국 - 생산국 - 판매국 조합에 따른 공헌이익 분석과 증분손익 분석에 기초하여 이익 극대화 解(해) 도출

A. 관세율 및 FOB가격 조정율

구분	국가 (원산지)	일반 관세율	추가 관세율 (*1)	관세율 계	미국향 FOB 가격 조정율
완성차	한국	20.0%	0.0%	20.0%	-10%
	인도	7.1%	0.0%	7.1%	0%
	튀르키예	9.3%	0.0%	9.3%	0%
	체코	4.4%	0.0%	4.4%	0%
	브라질	9.2%	0.0%	9.2%	0%
	베트남	1.9%	0.0%	1.9%	0%
부품 (HS Code별)	인도네시아	2.9%	0.0%	2.9%	0%
	중국	6.5%	120.0%	126.5%	0%
	멕시코	0.0%	41.9%	41.9%	0%
	캐나다	2.2%	52.1%	54.3%	0%
	한국	7.2%	0.0%	7.2%	0%
	인도	8.6%	0.0%	8.6%	0%
	튀르키예	9.0%	0.0%	9.0%	0%
	체코	4.7%	0.0%	4.7%	0%
	브라질	8.2%	107.7%	115.9%	0%
	베트남	8.3%	195.2%	203.5%	0%
	인도네시아	9.6%	0.0%	9.6%	0%
	...				

(*1) 추가관세율: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추가로 징수하는 관세율
2024년 9월 25일, 멕시코 등 10개국산 차량 외판용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미국 철강 생산자가 요청한 추가 관세율은 12.7~195%.
예비판정은 2025년 9월 말 예정.

B. 생산국별/제품별 단위당 공헌이익

(단위: \$/대)

구분	미국 G80	한국 G80	베트남 G80	인니 그랜저	...
순판매가격(A)	100,000	100,000	100,000	50,000	
변동비					
완성차 관세 (*2)	-	10,800	1,145	871	
재료비 (*3)	58,073	58,073	58,073	29,037	
부품 관세 (*4)	13,852	-	-	-	
노무비 (*5)	10,000	9,000	4,000	1,750	
운반비 (*6)	100	300	350	350	
계(B)	82,026	78,173	63,568	32,007	
공헌이익(C=A-B)	17,974	21,827	36,432	17,993	

(*2) 완성차 관세: 완성차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판매가격의 60%를 FOB 가격으로 가정
하고 완성차 관세율 적용
(*3) 재료비: 판매가격의 약 58% 가정
(*4) 부품 관세: 재료비의 약 절반을 미국으로 수입하고, 나머지 절반은 미국 내에서 조달
하는 것으로 가정. 부품 관세율은 중국-인도 평균 관세율(41.3%) 적용
(*5) 노무비: 판매가격의 10%(미국), 9%(한국), 4%(베트남), 3.5%(인니) 가정
(*6) 운반비: 미국 내륙운반비는 대당 \$100로, 한국은 국제운송 및 국내운송 합계 \$300를
로, 동남아는 \$350로 가정

C. 생산국별/제품별/판매국별 총공헌이익 최적화 해 찾기

(단위: 대)

생산 계획					판매 계획			
법인명	소재지	생산능력	생산모델	생산량	미국	한국	...	계
HMC	한국(*6)	1,600,000	G80	200,000	50,000	150,000		200,000
		...	...	1,400,000				-
HMMA	미국	340,000	G80	27,000				-
		...	...	313,000				-
HMI	인도	800,000	아반떼	63,000				-
		...	...	737,000				-
HAOS	튀르키예	190,000	소나타	29,000				-
		...	...	161,000				-
HMMC	체코	330,000	팔리세이드	25,000				-
		...	...	305,000				-
HMB	브라질	210,000	G80	25,000				-
		...	...	185,000				-
HTMV	베트남(*6)	100,000	G80	100,000	100,000			100,000
		...	...	-				-
HMMI	인도네시아	150,000	그랜저	74,000				-
		...	...	76,000				-
계		3,720,000		3,720,000	150,000			150,000

(*6) "베트남생산-G80-미국판매" 조합의 대당 공헌이익이 가장 높으므로, 베트남 공장에 미국 수요를 우선 배정.
그 다음 한국 순...

4. 변경된 생산계획이 이전가격 및 APA*, 관세, 법인세, 국제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 필요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

딜로이트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와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은 반덤핑, 관세, 이전가격, 국제조세 및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적 지식과 업무경험을 통해 기업이 국제통상 질서 변화에 대한 최적의 대응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배두용 리더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 리더

Tel : 02 6099 4847 |
E-mail : doobae@deloitte.com



심종선 이사
국제통상자문 리더

Tel : 02 6138 5045
E-mail : jonshim@deloitte.com



유정곤 파트너
관세자문 리더

Tel : 02 6676 2561
E-mail : jyou@deloitte.com



이용찬 파트너
이전가격자문 리더

Tel : 02 6676 2828
E-mail : yongclee@deloitte.com



Scott Oleson 파트너
국제조세 리더

Tel : 02 6676 2012
E-mail : scoleson@deloitte.com



심윤수 이사
규제 리스크 자문 리더

Tel : 02 6676 3376
E-mail : yunshim@deloitte.com

Deloitte.

전 세계 경제·산업·경영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  MZ세대 소비자, ESG, 경제전망 등 이슈 분석 리포트
-  CEO·CFO 분기 서베이, 자동차구매의향지수 등 경영·산업 동향 지표
-  딜로이트 전문가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있는 영상 콘텐츠
-  채용공고, 임직원 브이로그, 이벤트 안내 등 다양한 딜로이트 소식

 카카오톡 채널



 앱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정동섭 Partner dongjeong@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연구원 김사현 Director sahekim@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	--	--	--	---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 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